

**참여연대** 공동대표 : 박상증·이선종·최영도 110-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-3 안국빌딩신관 3층  
대표전화 : 723-5300 팩스 : 723-5055 전자우편 : [pspd@pspd.org](mailto:pspd@pspd.org) 웹사이트 <http://peoplepower21.org>

**문서번호** 사법-2004-1004  
**수 신** 송광수 검찰총장 / 윤종남 서울남부지검장  
**참 조**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 이권재 부장검사  
**발 신**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(담당 : 박근용 간사 02-723-0666 [kypark@pspd.org](mailto:kypark@pspd.org))  
**제 목** 전직 검사의 알선수뢰행위에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?  
**날 짜** 2004. 10. 26. (총 2 쪽)

## 전직 검사의 알선수뢰행위에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?

.....

1. 안녕하십니까? 송광수 검찰총장님, 그리고 윤종남 서울남부지검장님
2. 얼마전 '한겨레'신문을 통해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(부장 : 이권재, 주임검사 이종대)가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중 부산지검에서 수사하던 고객예탁금 횡령사건의 피의자로부터 구속을 면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천만원을 수수한 강민구 전 검사를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이 알려졌으며, 아울러 검찰이 강 전 검사에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한 것이 사건의 실체에 맞는 올바른 법적용인가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.
3.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(소장 : 조국, 서울대 교수)는 불구속 기소된 강민구 전 검사가 청탁의 댓가로 2천만원을 수수한 것은 현직 검사로 재직하고 있던 시기였던만큼, 강 전 검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132조(알선수재)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(뇌물죄의 가중처벌)를 적용해야 한다고 봅니다.  
검찰이 강 전 검사의 행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혐의를 적용하였다는 것은, 검찰 스스로 청탁을 댓가로 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. 그렇다면 금품수수가 과연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을때이나 그렇지 않을 때이나에 따라 형법 제130조와 특가법 제2조를 적용하든지 변호사법을 적용하든지 구별될 것 일진대, 검찰이 밝히고 있듯이 강 전 검사는 서울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하던 중에 금품을 수수하였고 그 금액도 1천만원 이상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2조 등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.

4.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선고되는 변호사법을 적용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, 이른바 '검찰의 제식구 감싸기'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.

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이 강민구 전 검사의 검사재직시절 알선수뢰 행위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오니, 그 이유를 자세히 밝혀주길 바랍니다. 끝

**참여연대 공동대표 박상증·이선종·최영도**